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

제정 2017. 03. 02.
2차 개정 2019. 06.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수요자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교육만족도조사, 분석, 평가 및 개선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수요자”라 함은 본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본교와 관련된 산업체 등을 말한다.
2. “교육만족도조사”라 함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수요자 대상 모든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

제4조(조사시기) 교육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관부서) 교육만족도조사의 주관부서는 기획평가처로 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6.25)

1. 연간 조사 계획 수립
2. 조사 결과의 총괄 분석
3. 실행부서간에 조사관련 사항 조정
4. 기타 조사관련 사항

제6조(실행부서) 교육만족도조사의 실행부서는 교육수요자와 관련된 모든 부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진행 및 평가
2.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계획 수립 및 실시
3. 기타 조사관련 사항

제7조(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 ① 교육만족도조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획평가처장, 교육연구처장, 학생행복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술정보원장, 인재개발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05., 2019.06.25)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시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5)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조사 및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실행부서의 조사계획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② 실행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2. 조사대상 업무 또는 부서
3. 조사시기

- 4. 조사방법
- 5. 조사항목
-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조사 및 보고) ① 실행부서는 조사자료를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각 실행부서의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사결과를 수요자 만족도 제고 정책에 적극 활용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실행부서는 개선계획에 의거 예방조치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실행부서의 개선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부-71, 2017.03.02.)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02, 2017.12.05.)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